

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5. 10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창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총괄하며, 학생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육성 발굴하고, 이를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한 경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센터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대학 전체 또는 학과(부)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4. 대학 내 학생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
5.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6. 지역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관리
7.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캠퍼스에는 분원을 두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센터장 1명
2. 산학협력교수 약간명
3. 운영위원 10인 이내
4. 매니저 또는 행정직 약간명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매니저 또는 행정직)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수행과 학생들의 교육 및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에 행정직 또는 창업매니저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본교 교직원, 연구원, 법인이사, 유관기관 전문가 중 10인 이내로 센터장이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 유관기관(중소기업청 등) 전문종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 산학협력교수의 창업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
 - 4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창업교육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본교자체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